

# 오리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오리 농장 AI 표준행동요령

## 1. 공통사항

- 1) 가금 사육자는 AI 발생국 여행 자제,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입국 시 공항 소독 및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준수
  - 신고대상 :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 2)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예찰 철저
  - 주요 임상증상 : 침울, 졸음, 폐사, 산란율 저하



◀ 폐사 및 졸음 증상  
▶ 안면부의 부종 및 눈물흘림

◎ 육계(육용오리) 농장은, 평소 입식과 출하를 각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출하 후 14일 휴지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입식 전 청소, 세척, 소독 철저)

\* 14일 휴지기간은 특별방역대책기간('18. 11월~'19. 2월)과 발생기간에 해당됨

- 3) 의심가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AI 의심가축 발견시 신고처

◎ 관할 지자체(☎ 1588-4060)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 4) 농장입구는 항상 닫혀져 있어야 하며,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설치



출입구 봉쇄

- 5)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소독시설 구비 등 준수사항 이행

#### 소독시설 구비 준수사항

공통사항  
(50㎡ 이하  
농가제외)

-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
-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
- 출입기록부와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50㎡ 이상  
1,000㎡ 미만  
농가

-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  
\*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대체 가능
- 소독약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 분무기를 구비

1,000㎡ 이상  
규모 농가

-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
-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 분무기를 구비

- 6)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알 수송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차량소독 실시

- 7) 농장 방문자는 농장 출입 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관리자 및 외출 후 농장 출입 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축사 전용 의복으로 환복 등 기본 수칙 준수



농장출입 전후 소독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

- 8) 축산 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매일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외부 소독

- 9)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사료빈 주변 주기적으로 소독



- 10) 쥐·야생조류 등은 질병전파의 우려가 높으므로 축사 내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철재 및 정기적 구서작업 실시



정기적 구서작업 실시



농장 출입 전후 소독 및 환복



설치류 침입 방지용 헵스



배수구 그물망 설치

설치류에 의한 고병원성 AI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기금농장)

- ◎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분변과 접촉한 쥐, 야생고양이, 텃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유입

- 11)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 농장 내에 방치하거나 개에게 먹이로 주어서는 안되며, 매물·소각 등으로 처리
- 12)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 사용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작업자의 농장관리과정



차량, 장비, 주사기 등도 바이러스 전파 원인

동과동 사이 장비 공유 자제

왕겨살포차등 장비에 의한 세바이러스 오염 과정



시오염 축사의 왕겨살포 작업



축사 출입구 오염



다른 축사도 시 발생

- 13)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출입 후에는 장비 및 의복관리(세척, 소독, 폐기 등)를 철저히 시행



축사 출입 전 환복

축사 내·외부 신발 분리 철저

신발, 축산도구 등으로 인한 발생사례(전북 고창 소재 가금농장)

- ◎ 철새들이 배설한 분변이 농장 및 축사 주위에 오염  
→ 신발, 축산도구 및 장비 등에 분변이 붙어 축사 내 유입

- 14) 계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어야 하며 소독액은 매일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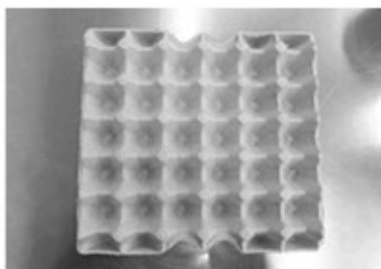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방역교육 실시



- ▲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 발판소독조 오염 시 즉시 교체

## 2 종오리 농장

- 1) 종란을 이동 시 일회용 종이난좌 사용(재활용 금지), 종란 저장고에 대한 훈증 소독을 철저히 하여 종란에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조치



일회용 종이 난좌 사용



종란 저장고 내 청결 유지

플라스틱 난좌의  
위험성

◎ 전북 지역 종오리 농가의 플라스틱  
난좌에서 고병원성 시바이러스 검출

- 2) 종란 수거 시에는 종오리장을 중복으로 방문해서는 안되며, 부화장 방문 후 타 종오리 농장 방문 금지

오염된 종란 운반차량(사람) 방문에 의한 발생 사례

◎ 축산시설(전북)을 방문한 종란 운반차량이 오염되어 종오리 농장에 출입하여  
해당 농장에 바이러스 전파

- 3) 새끼오리를 분양한 차량은 종란을 수고해 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 (새끼오리 분양차량과 종란수거차량 별도 운영)
- 4) 산란율, 폐사수, 음수량 및 사료섭취량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질병을 의심하여 신고하고 종란납품이나 타농장·부화장 방문 금지
- 5) 육추사에서 성압사로 오리를 이동할 경우 가급적 어리장을 사용하고, 어리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축사 간 이동통로를 소독한 후 이동
- 6) 부화장에 종란을 납품한 후 농장으로 되돌아와서 농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

### 3. 육용오리 농장

- 1)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사람과 차량 및 체중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 및 체중측정 허용

생석회 살포방법(예시)



-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독효과가 사라지므로 자주 추가 도포하는 것이 좋음
-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닐 벽 등 가연성 물체와 일정 거리를 두어 도포

